



2024학년도 귀국자 편 · 입학 업무처리 지침

2024. 2.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중 등 교 육 과

목 차

- I. 관련 법령 1
- II. 용어의 정의 2
 - 1. 유학 2
 - 2. 인정유학 2
 - 3. 미인정유학 2
 - 4. 특례편입학대상자 2
 - 5. 일반귀국자 2
 - 6. 면제 2
 - 7. 거주기간 및 체류기간 2
 - 8. 영사확인 3
 - 9. 아포스티유확인 3
- III. 유학 및 귀국자 관련 학적처리 3
 - 1. 인정유학자 3
 - 2. 미인정유학자 4
- IV. 편입학(재취학) 처리 절차 5
 - 1. 편입학(재취학) 신청 및 심사 5
 - 2. 구비서류 7
- V. 학력 인정 기준 및 학년 배정 9
 - 1. 외국의 학교교육 인정 기준 9
 - 2. 편입학(재취학) 학생의 학년 배정 9
 - 3. 북한 이탈 학생의 학년 배정 11
 - 4. 학력 인정 및 학년 배정시 유의사항 11
- VI. 귀국자의 학교생활기록부 및 건강기록부 관리 12
 - 1. 성적산출 12
 - 2. 외국학교 자료 12
- VII. 중·고등학교 특례편입학 13
 - 1. 특례편입학 13
- VIII. 재외 한국학교 재학생의 전입학 처리 20
 - 1. 개요 20
 - 2. 재외 한국학교 전출입 20
 - 3. 전출입시 학적 처리 20
- [참고 및 서식] 22
 - 1. [참고1]상담 사례 Q&A 22
 - 2. [참고2]아포스티유 협약 안내 27
 - 3. [참고3]재외한국학교 기본현황 30
 - 4. [참고4]재외한국교육원 기본현황 31
 - 5. [참고5]외국의 학제 32
 - 6. [서식1]고등학교(신·편)입학 신청서(귀국자용) 33
 - 7. [서식2]확인서 35

귀국자 편 · 입학 업무처리 지침

I 법적 근거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 제29조(유예자의 학적관리 등)
 - 제51조(학급수·학생수)
 - 제75조(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전학 및 편입학)
 - 제82조(입학전형방법)
 - 제92조(준용)
 - 제96조(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 제97조(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 제98조(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 제98조2(학력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27조(학력인정기준 및 절차)
-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44조(입학 등의 지원)
-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타법개정 2016.12.30. 대통령령 제27751호)
- 국외유학에관한규정(타법개정 2019.12.3. 대통령령 제30221호)
- 중·고등학교특례입학 업무처리요령(교육부고시 제2022-37호, 2022. 12. 26.)
- 강원도교육청 고등학교 전·편입학 및 재입학 시행 계획(2023. 2.)
- 강원도교육청 중학교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2023. 2.)
- 강원도교육청 고등학교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2023. 2.)
- 교육부 훈령 제393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2022.3.1.)
- 교육부 학교정책과 외국 초·중·고교 졸업 학력인정 관련 안내(학교정책과-485, 2015. 2. 2.)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확인)
- 학교보건법 제10조(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검사)
- 학생건강기록부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425호, 2022. 12. 26. 일부개정)

II 용어의 정의

1. 유학

「외국의 교육기관·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서 6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수학하거나 학문 기술을 연구 또는 연수하는 것」[대통령령 제30221호(2019.12.3.)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2. 인정유학: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의거 인정되는 유학

3. 미인정유학: 인정유학을 제외한 유학

가. 해당 국가 정규학교에 재학하지 않은 경우

나. 의무교육대상자로 부모와 함께 외국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다. 인정유학 사유에 해당되더라도 수학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4. 특례편입학대상자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제4호에 해당하는 자

☞ IV 편입학(재취학) 처리절차 및 VII 고등학교 특례입학 및 편입학 참조

5. 일반귀국자

○ 외국에서 6개월 이상 수학한 학생 중 특례편입학대상자가 아닌 경우

6. 면제

○ 의무교육 받을 의무를 면하는 것으로 유학(미인정유학 제외), **경당한 해외 출국** 등의 사유로 인해 국내에서 취학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의무교육기관에만 해당)

※ ‘경당한 해외 출국’이란? 이민, 부모의 해외취업, 공무원 및 상사주재원인 부모의 해외파견, 연구 수행 목적의 교환 교수 등에 의해 가족(부 또는 모)이 동행하여 외국으로 출국한 경우

7. 거주기간 및 체류기간

가. 거주기간: 특정 국가에 거주할 목적으로 출국하여 당해 국가의 재외공관에 재외국민등록을 한 날로부터 재외국민의 등록이 만료된 날까지의 거주기간

나. 체류기간: 거주기간 내에서 당해 국가에 실제 체류한 기간

8. 영사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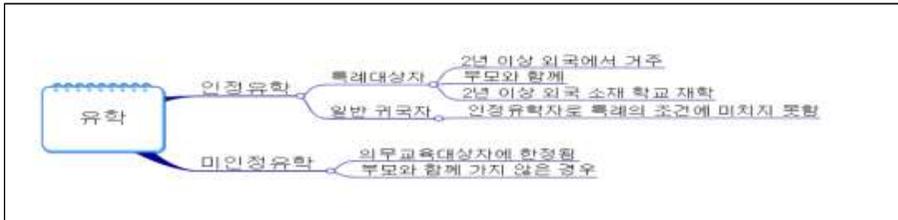
가. 문서의 국외사용을 위한 확인(Legalization)의 한 종류

나. 외국에서 발행한 학적서류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해당 외국(주재국)에 소재한

우리나라 영사관이 해당 학적서류가 영사관의 관할구역에서 발행되었다는 사실 또는 관할 재외공관을 거쳤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주는 것

9. 아포스티유 확인

- 가. 문서의 국외사용을 위한 확인(Legalization)의 한 종류
- 나.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 따라 외국에서 발행한 학적서류를 해당 외국(주재국)에 소재한 우리나라 영사관의 추가적인 확인 없이 우리나라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공문서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에 한함



- 2) 유학 당시의 **학년으로 다른 학교에 편입학할** 경우
 - 유학 관련 서류를 갖추어서 **거주지 학교 및 교육지원청**에서 상담 후 편입학 신청
 - 전가족이 해당 거주지에 살고 있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필요
- 3) 유학 당시의 **상급 학년으로 편입학할** 경우
 - 귀국자 편입학 관련 서류를 갖추어서 **원적교(거주지 학교) 또는 교육지원청**에서 상담 후 편입학 신청

※ 유의 사항

1. 상급 학교급으로 편입학(재취학)을 하기 위해서는 이전 학교급 졸업(수료) 또는 그와 동등한 자격을 가져야 한다,
2. 상급학년으로 편입학시 학년 누락에 의한 제반 **불이익은 본인 감수, 자퇴한 학년의 학업성적 및 결석상황은 유지**
3. 인정유학인 경우는 의무교육대상자라 하더라도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거치지 않고, 국내의 재학 기간을 합산하여 학년을 배정할 수 있음

III 유학 및 귀국자 관련 학적처리

1. 인정유학자

- 가. 유학시 학적 처리
 - 1) 초·중학생: 해외출국 및 체류신고 후 취학의무(의무교육) **면제 처리**
 - 필요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부 또는 모의 해외파견 관련 소속기관 공문(파견 명령서 등), 이민 증명 서류(이민 비자 등)
 - 2) 고등학생: 해당 학교에서 **자퇴 처리**

나. 귀국시 학적 처리

- 1) 일반 귀국자: 해당 학년 정원 3% 내에서 정원으로 편입학(재취학) 허용
- 2) 특례편입학대상자: 해당 학년 정원의 2% 내에서 정원으로 편입학(재취학) 허용

다. 귀국시 편입학(재취학) 안내

※ **원적교 재취학을 원칙으로 함/단, 거주지 이전에 따라 타학교 재취학 가능**

- 1) 유학 당시의 학년으로 다니던 학교에 재입학할 경우
 - 원적교에 직접 방문 상담 후 해당 학교에 재입학 신청
 - 별도의 유학 관련 구비서류는 필요하지 않음

2. 미인정유학자

가. 출국시 학적 처리

재학 중인 초·중학교에서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되며,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장기 결석한 학생에 대하여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의 학적관리

[참고] 학년말에 미인정 유학으로 미인정 결석중인 학생의 학적 처리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0조의 수료요건을 갖춘 경우, 진급 또는 졸업으로 처리
- 예) 2023. 11. 15. 중학교 2학년에서 미인정 유학한 학생의 학적처리
 - '23. 11. 15. ~ '24. 2. 29. : 미인정결석으로 처리 후 중학교 3학년으로 진급
 - 2024학년도 3월 1일부터 수업일수 3분의 1이 되는 날까지 미인정결석으로 처리, 이후 정원의학적관리

나. 귀국시 학적 처리

- 1) 정원의 학적관리된 학생이 재취학을 원할 경우 반드시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음.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제2항」(단, 해당 국가 정규학교에 재학하지 않은 경우와 수학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통한 학년 배정 불가)
- 2) **정원의 학적관리된 당해 학년도에는 원칙적으로 재취학을 허용할 수 없음.** 단, 학생과 학부모가 당해 학년도에 재취학을 희망할 경우, 학교장은 아동보호 측면(UN 아동 보호 조약 또는 의무교육의 취지상)에서 재취학은 허용할 수 있으나,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를 통한 학년 배정은 불가**하며 출석일수 부족으로 학년말 진급이 불가(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50조)하여 **다음년도에 해당학년을 재이수해야 함**을 학부모에게 주시시킬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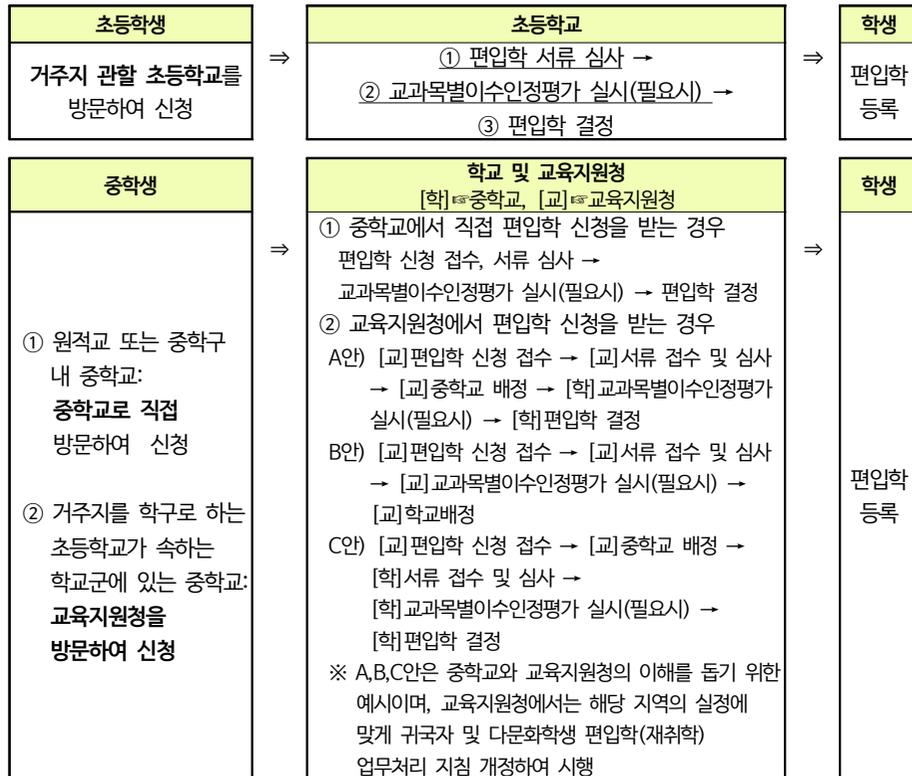
[참고] 미인정 유학 학생의 학적 처리

- '24.3.4. 미인정유학 학생의 학적처리 방법
→ '24.3.4. ~ '24.6.3.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 '24.6.4. 이후 정원의 학적관리
- 이 학생이 '23. 7월 중에 재취학을 요구할 경우, 원칙적으로 정원의 학적처리 된 당해 학년도에는 재취학은 불가하나, 학생과 학부모가 재취학을 희망하면 학년말 학년 과정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 부족으로 수료가 되지 않음을 확인시킨 후 재취학 가능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도 실시하지 못함)

IV 편입학(재취학) 처리 절차(귀국자, 재외국민아동 등)

1. 편입학(재취학) 신청 및 심사

가. 초·중학교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829호) 2020.7.14. 개정(2020.8.15. 시행)
- 외국에서 입국한 다문화학생, 귀국학생 등의 중학교 편입학(재취학) 방법이 학생의 원적교 또는 주소지 학구내 중학교로 직접 신청하는 방법과 학교군내 중학교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배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개정됨

나. 고등학교

- 1) 개별적으로 해당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재.편입학(구비서류는 동일함)
단, 미등록 이주아동 등 국내 및 국외의 교육과정 이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교육감이 배정
- 2) 상급학년으로 편입학은, 학칙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편입학 학년의 수학적능력이 있다고 인정(평가)된 경우에 한해 가능함

다. 편입학(재취학)처리시 유의사항

- 1) 우리나라의 학기 중에 귀국하였을 경우, 수업일수(수학기간) 미달로 인한 학년배정 상의 문제를 예방하고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을 돕기 위하여 **외국학교 최종 재학일 이후 1개월 이내에 거주지 학교(또는 교육지원청)에 직접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편입학 신청할 것을 권장함** (※단, 해당 학기를 이미 이수하고, 편입학 할 경우는 1개월 이내를 반드시 지키지 않아도 무방하나 편입학한 학교의 학칙에 따라 외국 학교에서 성적을 취득한 학생의 정기고사 응시여부는 당해 학교의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특히 기말고사를 면제한 경우는 해당학생의 당해 학기의 교과학습발달상황(성적)은 공란으로 처리됨을 학부모 및 학생에게 사전 안내)
- 2) 의무교육대상자 중 미인정유학자인 경우는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함

[참고]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실시 기준

1.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실시 방법과 내용은 해당학교의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에서 정한다.
○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방법과 내용은 해당학교의 규칙에 따라 실시함
예시)
-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교과 중 2개 이상의 과목에 대하여 지필평가
- 학교 상황에 따라 지필평가 과목 변경 및 과목수 가감 가능
- 교과에 대한 면접 평가
- 특성학교의 경우 전문교과 과목을 포함하거나 전문교과 과목으로 대체 가능
2. 지필평가 내용과 범위 및 난이도는 입학 신청 학년 직전 학기 해당학교 정기고사에 준한다.

-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예방접종 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 (편입학 하기 전 국가에서 예방접종한 증빙 자료가 있을 때에는 대체 가능)

※ 유의 사항

- 미 접종자는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지정된 병·의원에 등록하여 정기에 예방접종을 반드시 받도록 한다.
- 예방접종 금기자는 접종제의 대상 백신종류 및 사유가 표기된 <취학아동 예방접종 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

2. 구비 서류

가. 유형별 구비서류

구비서류	특례입학 대상자						일 반 귀국자	비 고
	외국에서 재학하고 귀 국 한 민 국 (제2호가목)	과학기술자 및 교수 요원의 자녀 (제2호나목)	북 한 이 탈 주 민 (제3호)	부 모 두 가 외국인인 학 생	기 타 외국인 학 생			
외국학교 전학년의 성적증명서 및 재학사실증명서	○	○		○	○	○	재학학년 및 재학기간 명시, 정규학교 임을 확인하는 재외공관 경우 증명 또는 아포스티유 인증(단, 교육부 홈페이지-정책정보공표-초중고 교육에 탑재된 외국학력인정학교 한하여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없이 학교장 서명 또는 날인 된 발급서류로 인정 가능)	
국내 최종학교 재학 (제적, 졸업)증명서	(○)	(○)				○	최종재학 년월일 및 최종재학 학년 명시	
국내최종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출력물	(○)					(○)	같은 학교급으로 편입할 경우	
출입국사실증명서	○ (부, 모, 학생) 중학교 졸업 이후 재비유학자는 본인만	○ (부, 모, 학생)		○ (부, 모 중 1인, 학생)	○ (부, 모 중 1인, 학생)	○ (학생)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 동(면) 주민센터, 민원24사이트	
호 적 등 본				○	○		순수외국인은 호적 등본에 해당하는 외국경부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	
전가족 주민등록등본	○	○	○			○	귀국 일자 이후 발행	
· 국내거소사실증명서 · 영주권(시민권)사본 ·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셋 중 하나)	(○) 특례대상자만 제출 (부, 모, 학생)				○ (부, 모 중 1인)		외국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재외국민 등(면) 주민센터, 민원24사이트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또는 체류기간확인서	○ 특례대상자만 제출(부, 모, 학생)						재외공관장 발행, 외국 체류기간명시	
유지과학기술자, 교수요원의 정부 초청 또는 추천서 사본		○					교육부의 유지초청 위탁기관 발급	
제3국 수학인정서	(○)						부모체류국 해외공관장	
우리나라에서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부, 모, 학생)	○ (학생)		출입국관리사무소 동(면) 행정복지센터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해당 행정시(군)장 발행	
학력확인서			○				해당 행정시(군)장 발행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			○				해당 행정시(군)장 발행	
편입학신청서	○	○	○	○	○	○	해당학교 서식 활용	
취학아동예방접종증명서	○	○	○	○	○	○	인터넷(민원24), 접종받은 의료 기관 또는 보건소	

※ ()는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제3국 수학인정서 : 국제 정세, 내전 등으로 인하여 학생이 부모와 다른 나라에서 재학한 경우 부모 체류국 해외공관에서 발행

- 1) 서류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나 원본 제출이 어려울 경우, 원본 확인 후 이상이 없으면 원본대조 확인을 하여 사본 제출 가능 (원본대조 확인자 서명날인)
- 2) 교육부의 「귀국학생 등의 학적서류 처리 절차 간소화 안내」 [학교정책과-4982(2014. 8.22.)]에 따라 교육부 홈페이지(메인화면 : 정책·초·중·고 교육)에 탑재된 외국 소재 초중고 학력인정학교에 한하여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 없이, 학교장 서명 또는 날인된 발급서류(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인정

※ 단, 교육부 홈페이지 미탑재 학교일 경우 민원인이 해당국의 정규교육기관임을 소명(관할교육청의 학력인정학교 목록 등)하거나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관 공증절차를 거쳐 확인[아포스티유 가입국 현황 (참고2) 참조]

- 3) 단, 아포스티유 가입국이라 하더라도 해당국의 홍보가 미흡하거나 제한된 지역에서만 발급을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재외공관의 정규학교 확인 등으로 대체하여 이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 4) **영문 이외의 외국어 서류는 한글로 번역공증하여 제출**

나. 구비 서류 발행처

- 1) 출입국사실증명서: 출입국관리사무소, 시·군청, 행정복지(주민)센터, 정부24
- 2)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체류국 재외공관, 외교부 여권과, 영사민원24
- 3)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출입국관리사무소, 시·군청, 행정복지(주민)센터, 정부24
- 4)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출입국관리사무소, 시·군청, 행정복지(주민)센터, 정부24
- 5) 제3국 수학 인정서: 부모체류국 재외공관
- 6) 예방접종증명서: 거주지 관할 보건소
 - 해외거주시 발급받은 예방접종 증명서 혹은 수첩을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전산등록 요청 후, 전산등록이 완료된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

V

학력 인정 기준 및 학년 배정

1. 외국의 학교교육 인정 기준

가. 외국 학교 인정 범위

- 1) 국내가 아닌 외국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
- 2) 국내 소재 외국인 학교는 제외

- ◆ 제주국제학교(학력인정): 한국국제학교(KIS-Jeju), NLCS Jeju, 블랭섬 홀 아시아(BHA), SJA Jeju는 인정
- ◆ 채드워스도국제학교, 대구국제학교, 칼빈메니토바국제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제11조(학력인정) 및 동법 시행령 제9조(학력인정 외국교육기관 지정)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은 인정
- ◆ 청라달튼외국인학교: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제12조(학력인정)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은 인정

나. 우리나라 학제상의 초·중·고등학교 과정의 교육 연한을 기준으로 인정

다. 외국의 학제가 우리나라 학제와 다를 경우 우리나라 학제에 따른 학교급별 교육과정상의 교육 연한을 기준으로 외국의 학교교육과정과 학년을 인정

- 초등학교 과정 : 외국의 1 ~ 6학년 과정
- 중 학교 과정 : 외국의 7 ~ 9학년 과정
- 고등학교 과정 : 외국의 10 ~ 12학년 과정

2. 편입학(재취학) 학생의 학년 배정

가. 학년 배정은 외국학교 재학증명서상의 재학기간과 성적증명서상의 교육과정 이수 내용을 우리나라 학제(12학년제)에 맞추어 계산하여 정함

- ※ 미국에서는 9학년부터 고등학교 과정이라고 해서 미국에서 9학년 과정을 마치고 귀국한 학생을 국내 고등학교 2학년에 배정할 수 없음
- ※ 외국학교에서 재학한 학년을 그대로 인정하여 편입학 학년을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의 재학 기간(학기 단위)을 합산하여 우리나라 학제(12년제)에 맞추어 학년을 배정
- ※ 동일학년(학기) 중복수료(학제 차이로 인한 학기 중복수료는 제외)로 인한 수학기간이나,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등의 학력은 인정하지 않음.

나. 9월에 1학기가 시작되는 나라에 가서 공부함으로써 학제 차이로 인해 한 학기가 중복되었을 경우, 귀국 후 국내 학교에 편입학할 때 한 학기 올려주고, 한 학기 월반이 되었을 경우, 국내 학교에 편입학할 때 한 학기 내려서 학년을 배정함.(단 귀국 후 공백없이 연속하여 취학하는 경우만 해당)

[예1] 2021. 7. 20까지 국내 중학교 2학년(8학년) 1학기 재학

- 2021. 9. 1 ~ 2022. 6. 20 : G8(8학년) 수료
 - 2022. 9. 1 ~ 2023. 6. 20 : G9(9학년) 수료
 - 2023. 7. 1 : 국내 학교 편입학 시 고등학교 1학년으로 배정됨
- ⇒ 학제차이로 인하여 중2(1학기)를 중복(G8,8학년)하여 중3을 수료하였으나, 총 재학기간을 계산하면 고1에 해당 되므로 고 1에 배정

[예2] 2021. 7. 20까지 국내 중학교 2학년(8학년) 1학기 재학

- 2021. 9. 1 ~ 2022. 6. 20(7,8월 방학) : G9(9학년) 수료
 - 2022. 9. 1 ~ 2023. 6. 20 : G10(10학년) 수료
 - 2023. 7. 1 : 국내 학교 편입학 시 고등학교 1학년으로 배정됨
- ⇒ 학제 차이로 8학년 2학기 과정을 이수하지 못하고 월반하였으므로, 국내 편입학 시 월반한 한 학기를 빼서 10학년 1학기까지 수료한 것으로 인정
- ⇒ 국내 재학기간 7년 6개월(7.5학년)+국외교육기관 재학기간 2년(2학년)=9년 6개월(9.5학년)
- ⇒ 귀국시 고등학교 1학년 2학기로 편입학 가능

다. 외국에서의 유치원 수료, 어학연수(ESL), 개인 학습(가정교사) 등은 학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단, 정규학교 ESL반(과정)에서 정규교육과정의 과목과 동일한 과목을 이수하고 성적 이 산출된 경우에는 학력 인정

라. 거주 국가의 학제가 10년~11년인 경우, 그곳에서 졸업하였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학제에 맞추어 해당 학년에 편입학하여야 대학입학 자격이 됨 (단, 해당국가에서 초·중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우리나라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을 인정하여 국내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기회 부여)

[예] 2021. 5. 20까지 국내 고등학교 1학년(10학년) 1학기 재학

- 2021. 6. 1 ~ 2022. 3. 20 : G10(10학년) 수료
- 2022. 6. 1 ~ 2023. 3. 20 : G11(11학년)수료 (11학년제 말레이시아에서 고등학교 졸업)
- 2023. 5. 1 : 국내 학교 편입학 시 고등학교 3학년으로 편입학하여 국내고등학교를 졸업하여야 대학입학 자격이 주어짐

마. 미인정 유학자인 경우 학력 인정 및 학년 배정 시 반드시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를 거쳐야 함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참고] 유예자 등의 학적 관리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②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결석을 한 자로서 정원으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자 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의무의 면제나 유예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하거나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 제29조 2항은 장기간의 질병 등으로 의무교육을 유예 또는 면제를 받은 자가 학교에 다시 다니고자 할 경우, 재취학자의 학교 적응을 고려하여 일정한 평가를 거쳐, 이에 상응하는 학년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당해 학년도 재취학자는 이미 학년이 정해져 있으므로, 적용이 불가함**

3. 북한 이탈 학생의 학년 배정

가. 북한 이탈 학생의 편입학 학년 배정은 북한에서 수학한 기간에 따라 학력을 인정함

- 1) 국내의 초·중등교육과정에 해당하는 북한의 인민학교(4년제)와 고등중학교(6년제)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경우, 국내의 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 이수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함
- 2) 북한의 고등중학교 3학년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는 국내 중학교 1학년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과 동등하며, 북한의 고등중학교 5년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는 국내의 중학교 3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함
- 3) 북한이탈주민의 학력인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학력심의회위원회의 학력인정 및 학력결정 사항에 따름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의2)**

나. 학년결정은 해당 학교장이 결정하되,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력심의회위원회 규정”을 참고하여 결정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함

다. 의무교육 기간에 해당되는 연령에는 교육정도와 무관하게 그 해당연령의 학년 배정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의 희망을 고려함

라. 북한 이탈 학생의 경우 이탈에 따른 시간 소모로 인해 서류심사 시 연령에 비해 매우 낮은 학년으로 배정되어 적응상의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를 실시하여 연령에 맞는 학년으로 배정 가능함 (단, 재학 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상급학교 특례입학 불가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학생, 학부모에게 충분히 안내)

※ [다문화교육포털\(www.edu4mc.or.kr\)](http://www.edu4mc.or.kr)-[알림공간-자료검색](#) 자료 활용

4. 학력 인정 및 학년 배정시 유의 사항

가. **인정 유학자인 경우는** 국내 재학 기간과 국외 정규 학교 재학기간을 합산(외국학교 재학증명서상의 재학기간과 성적증명서상의 교육과정 이수 내용을 우리나라 학제에 맞추어 계산)하여 학년을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참고] 편입학 관련 규정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4조(편입학 등)

① 편입학할 수 있는 자는 편입학하는 학년의 전학년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자 및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어야 한다.

나. **미인정 유학자인 경우는**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 실시 후 기준에 따라 학년을 정하여야 함

다. 귀국 전 **재적교 재학일로부터 전편입학 신청일까지**의 학업공백이 출석일수의 1/3 이상인 귀국자는 학년 배정 시 출석일수 2/3 이상이 확보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당해 연도에는 편입학이 불가하며, 편입학하더라도 출석일수가 부족하여 학년말에 **진급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학부모에게 주지시키고 편입학 허용

라. 대입 특례대상자의 경우 국내외 정규학교에서의 총 재학기간이 부족하거나(11년 6개월 미만) 학년의 누락, 중복이 있는 경우 이를 무시하고 편입학 학년을 결정할 경우에 상급학교 특례입학 불가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함.

VI 귀국자의 학교생활기록부 및 건강기록부 관리

1. 성적 산출

가. 해외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북한이탈 주민의 자녀 등은 **국내 학교에 전·편입학한 후 취득한 성적**으로 원점수, 성취도, 과목평균, 과목표준편차, 석차, 석차등급 등을 산출

나. 단, 해외에서 귀국한 학생의 전·편입학 이전 성적이 국내에 있는 경우 이를 인정할 수 있음

2. 외국학교 자료

가. 유학(미인정유학 포함)하고 귀국한 학생의 유학기간의 ‘교과학습발달상황’란은 공란으로 둔다. 다만, 관련 서류는 별도 관리하다가 해당학생 졸업 후 전산출력물에 첨부하여 보관한다.

※ 동 기간의 기록은 학년을 결정하는 참고자료로 해당학년의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한 기록이 아니므로 해당 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할 대상이 아님(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의 ‘학적사항’처리 참조)

나. 교육부가 인가한 재외한국학교에 인정유학하여 재학하다가 귀국하여 우리나라의 학교에 다니게 되는 경우, 당해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의 관련 내용을 입력할 수 있다.

3. 건강기록부 관리

가. 학생건강기록부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 제425호)에 따라 처리 작성하여야 한다.

나. 취학전 예방접종 항목에 대하여 확인자료가 있을 때에는 기재하고, 접종사실이 없거나 미 확인 될 경우에는 당해 연도 취학아동 예방접종 확인사업 지침(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에 따라 취학 후 접종한 다음 기재한다.

다. 건강검사 실시 현황은 편입학시점부터 기록관리 한다.

라.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기준에 따른다.

VII 중·고등학교 특례편입학

1. 목적

- 초·중등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이 1998년 3월 1일 제정·시행 후 일부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동 업무처리 관련 법령 조항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줌으로써, 관계인의 이해를 돕고, 중·고등학교 특례편입학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함.

※ 특례편입학은 신입학을 주내용으로 하나 전·편입학도 포함되는 것으로 함

2. 근거

가. 중학교

- 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인정자에게 중학교 입학자격 부여(초·중등교육법 제43조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6조)
- 외국에서 거주하고 귀국한 국민 등의 자녀에 대한 특례편입학은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인원수(비율)에 따라 정원으로 인정(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1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5조 :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북한이탈주민의 자녀가 국내 중학교에 입학·전학 및 편입학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나. 고등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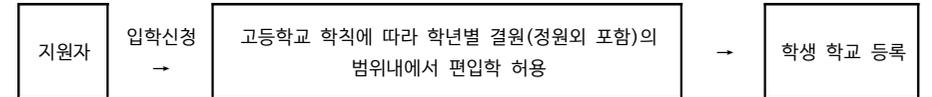
-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인정자에게 고등학교 입학자격 부여(초·중등교육법 제47조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
- 외국에서 거주하고 귀국한 국민 등의 자녀에 대한 고등학교 특례편입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외의 방법으로 입학전형(선발고사 등 전형 면제)(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제3항)
- 외국에서 거주하고 귀국한 국민 등의 자녀에 대한 고등학교 특례편입학은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으로 인정(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1조)

3. 특례편입학 자격(관련법령: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제3항)

구 분	자 격 요 건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거주자(제1호)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9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외국에서 재학하고 귀국한자(제2호가목)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 (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함)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제2호나목)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 요원의 자녀
외국인학생 (제2호다목)	외국인 학생(부모가 모두 외국인이어야 한다) 또는 외국에서 2년 이상의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외국인 학생(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대한민국의 국민인 경우에는 외국에서 2년 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을 말한다.) 복수국적자는 내국인에 포함되므로 대상 아님
북한이탈주민 (제3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의한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이북지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의 중학교에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4. 특례편입학 처리절차

가. 특례편입학절차



나. 특례편입학의 적용

1) 특례편입학 내용

구 분	입 학 정 원	선 발 방 법	근 거
중학교	정원 외 (해당학년 정원의 2%)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1조제2호 및 제82조제3항
고등학교	정원 외 (해당학년 정원의 2%)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 외의 방법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51조제2호 및 제82조제3항
중·고에 준하는 각종학교	정원 외 (해당학년 정원의 2%)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학교장이 정하는 방법	당해 학교의 학칙

2) 특례편입학 종류별 인정범위

구 분	특 례 입 학 인 정 범 위
외국소재 중·고등학교 재학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동일급별 학교에의 특례 전·편입학 ○ 국내 직 상급학교에의 특례 신입학
외국소재 초·중학교 졸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직 상급학교에의 특례 신입학

3) 특례편입학 허용기한

구 분	중 학 교	고 등 학 교
특례 전·편입학 예정자	외국소재 중학교 최종 재학학기가 시작된 날부터 1년 이내(2개 학기만 특례입학 허용)	외국소재 고등학교 최종재학 학기가 시작된 날부터 1년 이내(2개 학기만 특례입학 허용)
특례 신입학 예정자	외국소재 초·중학교 졸업자	초등학교 졸업학년도가 시작된 날(6학년 1학기초)부터 1년 6개월 이내(1개 학년도만 특례입학 허용)
	외국에서 9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중학교 졸업학년도가 시작된 날(3학년 1학기초)부터 1년 6개월 이내(1개 학년도만 특례입학 허용)
		중학교 졸업학년도가 시작된 날(3학년 1학기초)부터 3년 6개월 이내(2개 학년도만 특례입학 허용)

4) 특례편입학 효력

구 분	중 학 교	고 등 학 교
특례 전·편입학 예정자	중학교 전·편입학과 고등학교 신입학시 각1회 특례 인정	고등학교 전·편입학시 1회 특례 인정
특례 신입학 예정자	중학교 신입학시에만 1회 특례 인정	고등학교 신입학 시에만 1회 특례 인정

※ 외국인 및 북한이탈주민인 학생은 위 특례입학 허용기한 및 효력에 관계없이 특례입학

다. 특례편입학 학년

- 특례입학은 외국 재학학교와 동일한 학교과정·동일학년·동일학기 이하로 전·편·신입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6개월 이상의 학업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총 수학기간에 의해 전·편·신입학 학교급 학년을 결정

- 외국과 우리나라의 학제 차이로 국내에서 계속하여 수학하였을 때의 학년보다 높거나 낮추어 전·편·신입학하는 경우 1학기(6월)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
- 국내에서 계속 수학하였을 때의 학년보다 월반 귀국하여 전·편·신입학을 할 경우 외국에서 재학한 학년에의 전·편·신입학은 가능하나, 초·중·고등학교 재학기간이 부족한 경우의 상급학교 특례입학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음

라. 외국의 학교과정 및 학교인정 범위

1) 외국의 학교과정 인정 기준

- 우리나라 학제 상의 초·중·고등학교 과정과 교육 연한을 기준으로 인정
- 외국의 학제가 우리나라 학제와 다를 경우 우리나라 학제(12학년제)에 따른 학교급별 교육과정 상의 교육연한을 기준으로 외국의 학교과정과 학년을 인정

초등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외국의 1~6학년 과정	외국의 7~9학년 과정	외국의 10~12학년 과정

1) 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 제96조(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제1항 제5호, 제6호

교육 연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우리나라 학제로 환산	초등학교과정						중학교과정			고등학교과정			대학교과정			
외국 학제	12	5년*			3년			4년			4년					
	13	6년			4년			3년			3년					
	11	6년			3년			2년			5년					
	13	2년		4년			3년			4년			3년			
	12	8년			4년			4년								

- 1개 국가에서 외국 초등학교 전 과정을 이수한 경우 인정함
- 2개 이상 국가에서 5년제 또는 6년제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 인정하되, 5년제 미만의 교육과정은 인정하지 않음

* 단, '5년제' 교육과정 수료자 중 보호자가 희망할 시, 초등 6학년으로의 취학(편입학) 가능
 ※ (예시) 일본 초등학교에서 2년 수학하고 베트남 초등학교(5년제)에서 3년 수학 후 초등학교를 최종 수료한 경우, 우리나라 중학교 1학년에 입학 가능함.

2)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 제97조(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제1항 제7호, 제8호

교육 연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우리나라 학제로 환산		초등학교과정					중학교과정			고등학교과정			대학교과정						
외국 학 제	12	5-3-4-4제				5년			3년*			4년			4년				
	13	6-4-3-3제				6년			4년			3년			3년				
	11	6-3-2-5제				6년			3년			2년		5년					
	13	2-4-3-4-3제		2년		4년			3년			4년			3년				
	12	8-4-4제				8년						4년			4년				

- 1개 국가에서 외국 초·중학교 전 과정을 이수한 경우 인정함
- 2개 이상 국가에서 9년제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 인정하되 8년제 이하는 인정하지 않으며, 국내에서 중학교로 재취학 또는 편입학을 해야 함
 - 다만, 8년제의 경우 마지막 3년을 한 국가에서 수료한 경우에만 중학교과정으로 인정
- * 단, '8년제' 교육과정 수료자 중 보호자가 희망할 시, 중학교 3학년으로의 취학(편입학) 가능
 - ※ (예시) 베트남에서 초등학교(5년)와 이탈리아에서 중학교(이탈리아에서만 3년 수학)를 수료한 경우, 우리나라 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 가능함.

3)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 제98조(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제1항 제9호

교육 연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우리나라 학제로 환산		초등학교과정					중학교과정			고등학교과정			대학교과정						
외국 학 제	12	5-3-4-4제				5년			3년			4년			4년				
	13	6-4-3-3제				6년			4년			3년		3년					
	11	6-3-2-5제				6년			3년			2년*		5년					
	13	2-4-3-4-3제		2년		4년			3년			4년		3년					
	12	8-4-4제				8년						4년			4년				

- 1개 국가에서 외국 초·중등학교 전 과정을 이수한 경우 인정함
- 2개 이상 국가에서 12년제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 인정하되 11년제 이하는 인정하지 않으며, 국내에서 고등학교로 재 취학 또는 편입학을 해야 함
 - 다만, 11년제의 경우 초·중등과정의 마지막 3년을 한 국가에서 수료한 경우에만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 * 단, '11년제' 교육과정 수료자 중 보호자가 희망할 시, 고등학교 3학년으로의 편입학 가능
 - 또한,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교육과정*의 기간만큼은 당해국 대학에서 이수한 과정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 이수로 인정
- * 당해국 학년제의 총 이수 연수와 교육부에서 제시하는 12년간의 차이 연수

4) 기타

○ 상기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해당 기관에서 최종 판단

< 인정 예시 >

- 외국에서 6년/9년 이상 초등/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모두 수료한 자
- 외국에서 초등/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모두 수료한 자
- 『국내 + 국외』교육과정 혼합 이수자(초·중 또는 중·고 통합과정 이수자)의 경우
 - 조기 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학교교육과정의 정상적 이수 및 수학능력을 고려하여 조기 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 평가 결과에 따라 학교장이 편입학(재취학) 여부 및 학년을 결정함

2) 외국학교 인정

- 국내가 아닌 외국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
- 국내 소재 외국인 학교는 제외
 -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제3항제2호가목 해당자는 동일국가에서 부모와 함께 거주하면서 재학한 경우만 인정하되, 부모 거주국의 지역, 종교 등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재외공관장이 인정한 경우 제3국에서 재학한 자 및 재외동포자녀는 예외로 인정

마. 외국에서의 거주 및 재학기간

- 외국 거주·체류·재학 기간(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제3항제2호가목 해당자)

구 분	거주 기간	체류 기간	재학 기간	비 고
부 모	2년 이상	1년 이상	-	거주 및 체류기간 동시 적용
자 녀	2년 이상	-	2년 이상	거주 및 재학기간 동시 적용

※ 외국 학교에의 입학수속에 소요되는 기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82조제3항제2호가목의 거주기간 또는 재학기간이 2년에서 미달된 때에는 각각 2월의 범위 안에서 거주기간과 재학기간을 단축하여 적용할 수 있음.

○ 기간 산정기준

구 분	산 정 기 준
거주기간	○ 특정국가에 거주할 목적으로 출국하여 당해국가의 재외공관에 재외국민 등록을 한 날로부터 재외국민의 등록이 만료된 날까지의 거주기간(재외국민등록부등본상의 체류기간)
체류기간	○ 거주기간 내에서 당해 국가에 실제 체류한 기간만을 합산한 기간
재학기간	○ 거주기간 내에서 이수한 학기 또는 학년의 해당 기간 ○ 학년 또는 학기의 이수 여부와 인정하는 재학 기간 등은 당해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와 당해 학교의 교육과정 및 우리나라의 학제와 동일급별 학교의 교육과정 등을 참작하여 결정 ○ 기간의 계산은 역년을 원칙으로 하되, 선의의 학생을 구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부정 특례입학의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학년(Academic year)을 제한적으로 적용

※ 대입특례 자격은 대학별 기준에 따르므로 아래 홈페이지 및 상담문의를 참조하거나 해당 대학에 직접 문의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입상담문의 : 전화 1600-1615 홈페이지 : www.kcue.or.kr

바. 고입 특례편입학 심사 절차

대상 학생 및 학부모	중학교	고등학교
심사서류 및 구비서류 제출	구비서류 적격 여부 확인 후 해당 고등학교에 접수	심사위원회 구성, 자격요건 심사, 최종 결과 통보

사. 고등학교 특례편입학 주의사항

- 1) 해외에서 부모와 함께 거주하면서 중학교 1학년 교육과정을 포함하여 연속하여 2년 이상 재학
- 2) 단, 재학 기간 중 공백이 있을 경우, 3년간의 기간이 필요함 (단, 초등 1~3학년 기간은 고입 특례시 인정하지 않음)
- 3) **외국에서 중학교 과정(7~9학년)중 일부가 포함되어야 함**(해당 과정 성적증명서와 재학 증명서 첨부가 가능한 경우)
- 4) 위의 두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에도 중학교에 신입학한 경우는 대상자가 아님

[사례]
 • 초등학교 4~5학년(2년)과 중학교 1년을 재학했을 경우 특례입학 대상자임
 • 초등학교 4학년(1년)과 중학교 1년을 재학했을 경우 특례입학 대상자가 아님(재학 기간 중 공백으로 인해 3년의 기간 필요)

아. 특례편입학 허용 인원 범위

- 1) 해당 학교 학년 정원의 2% 범위 내에서 정원외로 편입학 허용
- 2) 편입학시 특례 정원에 결원이 없을 경우 일반귀국자(3%) 정원 범위 내에서 허용 가능
 ※ 특례대상자가 일반귀국자 정원외로 편입학하여도 상급학교 진학시에는 특례입학생으로 지원 가능

VIII 재외 한국학교 재학생의 전입학 처리

1.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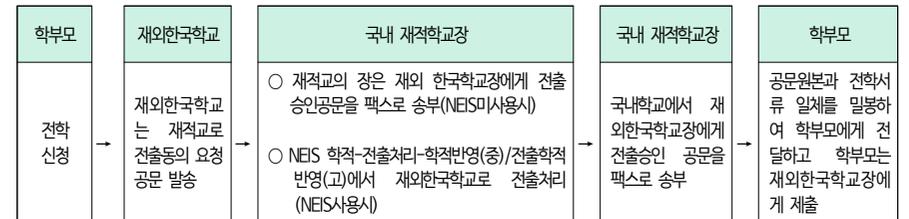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의거, 재외국민에게 초·중등교육법의 규정에 따른 학교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부의 승인을 얻어 외국에 설립된 재외 한국학교에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들은 **전입학** 처리

2. 재외 한국학교 전출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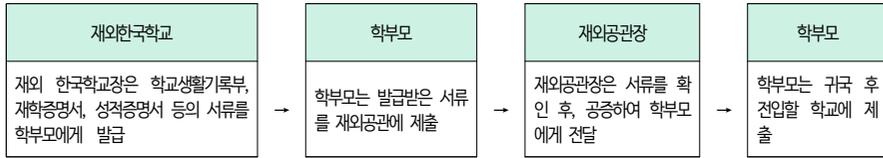
- 가. 귀국자 편입학 절차에 준하여 해당 학교에서 직접 실시
- 나. 교육부가 인가한 재외 한국학교만 해당
- 다. 인정유학자인 경우만 적용
- 라. 재외 한국학교 중 NEIS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의 Off-Line 방식(전출동의 요청 및 승인 등)으로 전출입무를 처리하고, **NEIS를 사용하는 재외 한국학교와의 전출입의 경우에는 국내 학교간 전출입 방법과 동일함.**

3. 전출입시 학적 처리

가. 국내학교에서 ⇨ 재외 한국학교로 전출



나. 재외한국학교에서 ⇨ 국내학교로 전입



※ 참고 : 재외 한국학교에서 취득한 학업성적은 전입학교의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국내 해당학년 해당교과 학업성적으로 반영처리 할 수 있음. 또한 제반 증빙서류는 당해 학교장의 직인으로 재외공관 영사의 확인을 같음함(교육부 재외동포교육담당관-4889(2013.11.27.)

【참고1】

상담 사례 Q&A

Q1: 일반 귀국자가 국내에서 2020년 12월까지 8학년(중2)에 다니다 외국에 나가 1년간 9학년(또는 9학년 한 학기, 10학년 한 학기)을 다닌 후 국내에 귀국하여 고교에 진학하려면 언제 귀국해야 하나요?

A1: 2022년 2월 중순까지 외국학교에 계속 다닌(재학) 후 성적증명서와 재학증명서가 분명하여 심사를 통과해야 고교에 편입학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12월에 학기를 마치고 2월 중순 이전에 귀국하면 고교입학을 할 수 없음)

※ 일반 귀국자가 12월에 학기를 마치고 2월 중순 이전에 올 경우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어려운 이유

- 고등학교 진학과 관련한 원서제출은 이미 12월에 끝났으며
- 고등학교 진학은 귀국 이후 내신성적으로 하는데 귀국 이후 내신성적이 없으며,
- 실제로 일반고에 지원하고자 하는 국내 학생들 중 상당수가 일반고 지원이 어려운데 외국에서 공부했다고 해서 특혜를 줄 수는 없음.

Q2: 국내에서 2021년 12월까지 중2(8학년)에 다니고 외국에 나가 1년간 다시 중2(8학년)를 다닌 후 국내에 귀국하면 고교에 진학할 수 있나요?

A2: 월반이나 중복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8학년을 다니다 외국에 나가 다시 8학년에 다닌 경우는 9학년을 이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교 진학을 할 수 없으며 중3(9학년)을 국내에서 다시 다녀야 합니다.

Q3: 국내에서 2020년 12월까지 중1(7학년)에 다니다 외국에 나가 2021년 1월부터 8월까지 어학연수를 한 후 2021년 9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8학년과 9학년 1학기를 다니다 온 경우, 몇 학년에 배정받아야 하나요?

A3: 고3을 졸업할 때까지 총 수학기간(순수 재학 기간)이 부족하여 중3 과정을 다시 해야 합니다.(어학연수 기간은 수학 기간이 아님)

Q4: 저는 2020년 5월 다니던 고교를 1학년에서 자퇴하고 부모동반 없이 혼자 뉴질랜드에 가서 어학연수를 마치고 2021년 2월에 정규학교 FORM5에 입학하여 재학하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 FORM6를 마친 후 2023년 1월에 귀국하고자 합니다. 저는 국내에서 몇 학년으로 편입해야 하며 또한 대입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요?

A4: 학생이 영어 실력을 쌓기 위하여 6개월 이상 어학연수를 한 기간은 정규수업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귀국 후 실제 자기 동급생들의 학년보다 한 학년 낮은 고2학년 2학기말로 편입학하여야 합니다. 또한 외국학교 최종 자퇴일 이후 1개월 이내(국내 학교

방학기간 제외)에 편입학 수속하여 배정받는 것이 좋습니다. 학생은 부모와 함께 거주하지 않는 일반 귀국자이므로 대입특례 적용을 받을 수 없고, 귀국 이후 내신을 가지고 국내의 동급생들과 동등한 방법으로 대학에 진학하여야 합니다.

Q5: 국내에서 10학년(고1) 1학기를 마치고 외국에 나가 11학년(고2)을 다니다 귀국한 일반 귀국자가 국내 10학년(고1)으로 내려 편입학이 가능한가요?

A5: 위 학생은 고2에 편입학할 수도 있고, 외국에서의 수학기간을 인정받지 않고 고1에 편입학할 수도 있습니다.

Q6: 국내에서 10학년(고1) 재학 중, 2020년 5월에 미국에 가서 2020년 9월부터 2021년 6월까지 9학년(중3)에 다니고, 2021년 9월부터 12월까지 10학년(고1)을 1학기 다닌 경우 귀국하여 고2로 편입학이 가능한지요?

A6: 미국에서 9학년을 다닌 것은 학제 차이로 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9학년(중3)은 인정되지 않는 학년이며 10학년(고1) 한 학기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귀국하여 2021년 12월 또는 2022년 1월중에 11학년(고2)이 아닌 10학년(고1) 학년말로 편입학하여야 합니다.

Q7: 저는 상사주재원으로 발령을 받아 가족과 함께 미국에서 근무하였으며, 큰 아이는 2020년 8월 중학교 3학년 1학기를 마치고 그 해 9월 미국의 정규학교에 9학년 1학기로 편입하여 2022년 12월 11학년 1학기 끝내고 귀국할 예정입니다. 귀국 시 고2로 편입이 가능한지요? 이 경우 대입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까?

A7: 고2로 편입이 가능합니다.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하고 2년 이상 재학하였으며 최종학년이 10학년 이상이므로 대입특례 적용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입 특례의 경우, 대학마다 지침이 다르므로 가고자 하는 대학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 편입학은 귀국한 이후 거주하실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부터 결원이 있는 곳에 직접 가서 서류 심사를 받은 후 학년 배정을 받고 등록하시면 됩니다.

Q8: 외국에서 11학년을 12월에 1학기 마치고 방학인 관계로 3월에 귀국하여 고등학교에 편입할 수는 없는지요?

A8: 외국에서 학기 수업이 끝나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국내 학교 방학기간 제외)에 서류를 준비해서 거주지에서 가까운 학교 중 결원이 있는 곳에 직접 가서 서류 심사를 받아 편입학하기 바랍니다.

Q9: 귀국자 편입학 대상자의 주소가 경기도인데 강원특별자치도에 있는 고등학교에 편입학하여 다닐 수 있는지요?

A9: 전국 단위 모집인 학교는 가능하며, 그 외의 학교는 전 가족이 강원특별자치도로 이사를 와서 실제로 거주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경기도에 있는 학교에 편입학하여 다녀야 합니다.

Q10: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외국에서 거주한 후 부모는 귀국하고 학생만 혼자 남아 3년을 채울 경우 대학특례입학이 가능한지요?

A10: 혼자 남아 공부하는 동안은 특례 기간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대학특례 입학은 대학마다 다른 지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고자 하는 대학에 직접 문의(대학 홈페이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11: 외국에서 초등학교 6학년 2학기까지 2년 이상 학교에 다닌 후 귀국하여 중1에 배정받을 경우 고입 특례대상이 되는지요?

A11: 고입특례대상이 되려면 2년 이상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2년 이상(비연속일 경우 3년 이상) 수학한 자로서 중학교 1학년 과정(G7)을 다니다 와야 합니다. 만약 초등학교 4-5학년을 외국에서 다닌 후 귀국하여 국내에서 초등학교 6학년, 중1(G7)을 다니다 다시 출국하여 8학년을 다닌 경우 비연속 3년 이상이므로 고입특례대상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초등학교 1-3학년을 외국에서 다니고 귀국하여 국내에서 초등학교 6학년까지 다닌 후 다시 외국에서 7학년을 다닌 경우는 고입특례대상이 아닙니다(초등학교 1-3학년은 계산하지 않음).

Q12: 필리핀이나 러시아에서 11학년제 학교를 졸업한 후 귀국하여 대학에 갈 수 있는지요?

A12: 해당국에서 초·중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에게는 우리나라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을 인정하여 국내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나 해당국 및 외국(한국 포함)에서 초·중등교육과정을 혼합 이수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Q13: 고등학교 입학 전행과 대학진학 시 귀국자의 내신 성적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A13: 특례대상자는 내신에 별 관계가 없습니다만 일반 귀국 학생은 국내 학교에 전·편입학한 후 취득한 성적으로 원점수, 성취도, 과목평균, 과목표준편차, 석차, 석차등급을 산출합니다. 단 해외에서 귀국한 학생의 전·편입학 이전 성적이 국내에 있는 경우 이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Q14: 외국에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다니다 귀국한 학생인데 한국 일반학교에서 적응이 어려워 국내 외국인학교에 다닐 경우 대학진학에 문제는 없는지요?

A14: 국내에 있는 외국인학교는 “학력미인정 각종학교”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학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내 외국인학교에서 국내 일반학교로의 전.편입학이 불가능하며, 고졸검정고시에 합격하지 않으면 국내 대학에 진학할 수 없습니다.

Q15 : 국외유학에 관한 관련 법규정을 알고 싶습니다.

A15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 ‘유학’이라 함은 ‘외국의 교육기관·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서 6월이상의 기간에 걸쳐 수학하거나 학문·기술을 연구 또는 연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제5조제1항에 의하면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만 자비 유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 체능분야나, 자연과학·기술·예능 또는 체능분야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입상한 실적이 있는 자, 올림픽경기대회 또는 아시아경기대회에서 금메달, 은메달 또는 동메달을 수상한 자 등은 교육장이나 국립국제교육원장의 승인(유학 인정 심사)을 받을 경우 중졸 이하라 하더라도 국외유학이 가능합니다.

Q16 : 2022년 고1 재학 중 3월 말에 자퇴하고 외국에서 당해 연도 4월부터 2022년 8월 까지 5개월 동안 고등학교 과정을 공부한 후, 국내에 귀국하여 2022년 9월에 고 1 학년 2학기로 편입학할 수 있나요?

A16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 ‘유학’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서 수학한 후 귀국한 일반 귀국학생이 국내 학교에 편입학하려면 적어도 6개월 이상 외국의 학교에서 재학하면서 수학하여야 하므로, 외국학교에서 5개월 동안 수학한 경우에는 국내 고1학년 2학기에 편입학 할 수 없습니다.(6개월의 기간은 외국에서 체류한 기간이 아니고 순수 재학한 기간을 의미함)

Q17: 국내에서 2021년 12월까지 중1(7학년)에 다니다 외국에 나가 2022년 1월부터 8월까지 어학연수를 한 후 2022년 9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8학년과 9학년 1학기를 다니다 온 경우, 몇 학년으로 재취학할 수 있습니까?

A17: 어학연수 기간은 수학 기간이 아니므로, 국내 재학기간 7년과 외국의 정규학교 재학기간 1년 6개월을 합산하면 8년 6개월, 국내 학제로 환산할 경우 중학교 3학년 2학기로 편입학 가능하나, 귀국하는 시기가 학년초에 해당하므로 중학교 3학년 1학기로 편입학하여 1학기를 중복하여야 합니다.

Q18: 초등학교 5학년 1학기를 마치고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외국에서 거주한 후 부모는 귀국하고 학생만 혼자 남아 1학기를 더 공부하고 귀국할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고등학교 특례입학이 가능한지요?

A18: 혼자 남아 공부하는 동안은 특례 기간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을 재학하였으나 미인정유학 기간인 1학기로 인하여 이 학생은 고등학교 특례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Q19: 외국에서 초등학교 6학년 2학기까지 2년 이상 학교에 다닌 후 귀국하여 중 1에 배정받을 경우 고입 특례대상이 되는지요?

A19: 고입특례대상이 되려면 2년 이상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2년 이상(비연속일 경우 3년 이상) 수학한 자로서 중학교 1학년 과정(G7)을 다니다 와야 합니다. 이 학생의 경우, 중학교 과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고입 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귀국하여 국내에서 중1(G7)을 다니다 다시 출국하여 8학년을 다닌 경우 비연속 3년 이상으로 고입특례대상에 해당됩니다.

【참고 2】

아포스티유(Apostille)협약에 따른 해외 이주 및 귀국자 전편입학 관련 안내

□ 아포스티유 협약

- 협약가입국들 사이에 공문서의 상호간 인증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외국 공관의 영사확인 등 복잡한 인증절차를 폐지하는 대신 공문서 발행국가가 이를 확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다자간 협약
- 우리나라 공문서(성적증명서 등)를 제출하기 위해 해당국가 주한대사관(총영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지 않고, **외교부 발행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아 협약가입국에 제출하면 협약국 공문서와 동일한 효력 인정**
- 협약가입국가 발행 공문서(성적증명서 등)에 대해 **협약가입국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으면 우리나라에서 우리 공문서와 동일한 효력 발생**
 ※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아포스티유)이 정식 발효(2007.7.14.)

□ 아포스티유 확인서

- 해외에서 사용될 우리 공문서(공증문서 포함)에 대해 외교부가 아포스티유 협약 규정에 따라 발급하여 주는 확인서로서 **협약가입국에서 동일한 서식 사용**
- 아포스티유 확인 대상 문서
 - 정부기관 발행 문서(공문서)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신분인 자가 기관장인 기관에서 업무 수행을 위해 발급한 문서 (**국공립학교발행 성적증명서**)
 - 공증문서 : 정부기관 발행 문서가 아닌 문서로서 공증인법 또는 변호사법에 의해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가 공증한 문서 (**사립학교 발행 증명서**)
 ※ 아포스티유에 관한 사항은 ☞ **외교부/영사·국가/아포스티유·영사확인 메뉴 활용**

□ 협약 체결 효과

- 아포스티유 협약 발효 후 외교·영사기관이 해당 공문서(공증문서 포함) 서명자의 자격 또는 공문서에 날인된 인영·스탬프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등 복잡한 확인 대신, 외교부(해당국 담당 기관)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음으로써 수속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절감됨
- 아포스티유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공문서에 대한 협약 가입국 대사관의 **영사확인 수속에 따르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게 되어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국민과 기업인의 국제 활동이 편리해짐
- 아포스티유가 첨부된 공문서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증절차 없이 협약 당사국 내에서 유통됨. 협약에 가입한 나라의 국민은 공문서에 '아포스티유'를 첨부할 경우 공문서가 제출 사용되는 다른 협약 가

입국 외교기관의 검증작업을 거치지 않고도 문서의 공신력을 인정받게 됨

□ 아포스티유 발급 기관 및 발급 방법

- **출국하여 외국의 교육기관에 편입학 할 때**
 -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6층 외교부 영사서비스과
 - 직접방문 또는 우편신청(상담전화 02-2002-0251)
 - 아포스티유 협약 관련 자료 : www.0404.go.kr /영사서비스/아포스티유 확인제도 참조
 - 공문서발급(번역문 첨부, 학교장 직인, 서명 또는 날인) ⇒ 외교부 확인(Apostille부착)⇒ 해당국가 교육기관에 제출(공문서로 인정)
- **외국에서 귀국하여 국내학교로 편입학 할 때**
 - 공문서 발급(번역문 첨부, 반드시 학교장 직인, 서명 또는 날인 포함) ⇒해당국가 외교부 또는 아포스티유 발급기관 확인(Apostille부착) ⇒국내 교육기관에 제출(공문서로 인정)

□ 절차 비교

현행 절차	아포스티유 발효 이후 절차
공문서 발급 ⇒ 우리 정부 확인(필요시) ⇒ 주한공관 확인 ⇒ 해당국가에서 공문서로 인정	<u>공문서 발급 ⇒ 외교부 확인 ⇒ 협약가입국에서 공문서로 인정</u>

□ 행정 사항

구비서류 심사시 참고 사항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반드시 입학연월일 및 재학 학년 명시, 학교장 서명 또는 날인) 단, 종전의 방법(영사관 또는 대사관 공증)도 병행하도록 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함 .주민등록등본(귀국일자 이후 발행된 것) ※ <u>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되지 않은 나라의 경우 종전처럼 영사관 또는 대사관 공증 필요</u>

□ 아포스티유 가입국 현황

(2024. 1. 11. 현재)

지 역	국 가 명
아시아 대양주 (22개국)	오스트레일리아(호주), 중국(마카오, 홍콩 포함), 일본, 한국, 뉴질랜드, 브루나이, 몽골, 쿡제도, 피지, 인도, 마셜군도, 모리셔스, 바누아투, 사모아, 통가, 니우에, 타지키스탄, 팔라우, 필리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유럽 (52개국)	알바니아, 오스트리아, 벨라루스, 벨기에, 보스니아 - 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조지아, 독일, 몰타,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모나코, 몬테네그로,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러시아, 루마니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튀르키예, 키르기스스탄, 북마케도니아, 우크라이나, 영국, 안도라,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몰도바, 리히텐슈타인, 산마리노,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코소보
북미 (2개국)	미국(괌, 마우리제도, 사이판, 푸에토리코 포함), 캐나다
중남미 (31개국)	아르헨티나, 멕시코, 파나마, 수리남, 베네수엘라, 안티가바부다, 바하마, 바베이도스, 벨리즈, 콜롬비아, 도미니카연방,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그라나다, 온두라스, 세인트빈센트, 페루, 트리니다드토바고,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코스타리카, 우루과이, 니카라과, 파라과이, 브라질, 칠레, 과테말라, 볼리비아, 가이아나, 자메이카
아프리카 (13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브룬디, 레소토, 라이베리아, 나미비아, 상투메프린시페, 말라위, 카보베르데, 세이셸, 세네갈, 에스와티니, 튀니지
중동(5개국)	오만, 이스라엘, 바레인, 모로코, 사우디아라비아
계	125개국

【참고 3】

□ 재외한국학교 현황 □

(22.4.1. 기준)

학교명	인가일	학생 수 (학급 수)					전임 교원 수					파견 ^(22.9.기준)			
		유	초	중	고	계	유	초	중	고	교장	교감	계	교장 (행정실장)	교사
동경 한국 학교	'62.03.16		716(18)	351(9)	324(9)	1,391(36)		41	14	16	1	2	74	1	
교토 국제 학교	'61.05.11			17(3)	139(9)	156(12)			9	15	1	2	27		2
오사카 금강 학교	'61.02.24		123(6)	64(3)	80(6)	267(15)		14	7	15		2	38	1	2
건국 한국 학교	'76.10.01	60(4)	145(6)	97(4)	159(9)	461(23)	10	9	14	18	2	2	55		
소계(4개교)		60(4)	984(30)	529(19)	702(33)	2,275(86)	10	64	44	64	4	8	194	2	4
북경 한국 국제 학교	'98.08.26	40(3)	212(11)	199(10)	241(12)	692(36)	4	24	10	35	1	1	75	1	
천진 한국 국제 학교	'01.03.05	53(3)	224(11)	124(6)	161(7)	562(27)	4	22	14	20	1	1	62	1	
상해 한국 학교	'99.07.06		331(15)	275(11)	311(13)	917(39)		35	27	31	1	2	96	1	
무석 한국 학교	'08.01.21	52(3)	176(8)	118(5)	114(6)	460(22)	6	13	34				54	1	
소주 한국 학교	'13.02.22	15(1)	138(7)	95(6)	101(6)	349(20)	1	12	6	15	1		35	1	
홍콩 한국 국제 학교	'88.03.01	19(2)	49(6)	16(3)	34(3)	118(14)	4	12	3	10	1		30	1	
옌타이 한국 국제 학교	'02.07.12		124(6)	90(4)	106(6)	320(16)		13	11	16	1		41	1	
칭다오 청운 한국 학교	'06.05.30	35(3)	275(12)	179(7)	210(9)	699(31)	4	23	15	23	1		66	1	
웨이하이 한국 학교	'17.10.24		107(6)	86(3)	85(3)	278(12)		12	8	9	1		30	1	2
대련 한국 국제 학교	'03.12.23	14(1)	62(6)	67(3)	65(3)	208(13)	1	12	9	10	1		33	1	5
선양 한국 국제 학교	'06.07.26	4(1)	53(6)	28(3)	47(3)	132(13)	2	10	7	9	1		29	1	11
연변 한국 국제 학교	'98.02.19	4(1)	31(6)	19(3)	30(3)	84(13)	1	8	6	7	1		23	1	6
광저우 한국 학교	'14.02.07		121(6)	118(5)	128(6)	367(17)		12	11	13	1		37	1	2
소계(13개교)		236(18)	1,903(106)	1,414(69)	1,633(80)	5,186(273)	27	208	161	198	13	4	611	13	26
타이베이 한국 학교	'61.10.01	16(2)	48(6)			64(8)	1	3			1		5	1	
카오슝 한국 국제 학교	'61.01.28	13(1)	30(6)			43(7)	2	5			1		8	1	
소계(2개교)		29(3)	78(12)			107(15)	3	8			2		13	2	
하노이 한국 국제 학교	'06.03.21		1,143(34)	535(16)	467(14)	2,145(64)		49	28	25	1	2	105	1	
호치민시 한국 국제 학교	'98.08.04	39(2)	1,040(30)	494(15)	474(15)	2,047(62)	3	63	34	33	1	2	136	1	
소계(2개교)		39(2)	2,183(64)	1,029(31)	941(29)	4,192(126)	3	112	62	58	2	4	241	2	
갯 다 한국 학교	'76.09.18		2(1)			2(1)		2			1		3	1	
리야드 한국 학교	'79.04.24		23(6)			23(6)		2			1		3	1	2
소계(2개교)			25(7)			25(7)		4			2		6	2	2
자카르타 한국 국제 학교	'77.04.25		310(14)	218(7)	277(11)	805(32)		28	20	18	1	2	69	1	
싱가포르 한국 국제 학교	'93.02.17	33(3)	164(10)	63(3)	100(3)	360(19)	5	25	11	12	1	1	55	1	
방콕 한국 국제 학교	'02.02.18		63(6)	33(3)	41(3)	137(12)		10	4	6	1		21	1	
필리핀 한국 국제 학교	'05.07.11	5(1)	57(6)	38(3)	39(3)	139(13)	2	14	6	7	1		30	1	
파라과이 한국 학교	'92.03.01	37(3)	49(6)			86(9)	3	6			1		10	1	3
아르헨티나 한국 학교	'95.01.23	51(5)	89(7)			140(12)	14	17			2		33	1	4
모스크바 한국 학교	'92.02.14	11(3)	40(6)			51(9)	1	6			1		8	1	2
테헤란 한국 학교	'76.04.30		6(3)			6(3)		3			1		4	1	3
카이로 한국 학교	'80.04.15		30(6)			30(6)		6			1		7	1	5
말레이시아 한국 국제 학교	'12.12.28	4(1)	31(6)			35(7)	2	9			1		12	1	4
프놈펜 한국 국제 학교	'18.08.28		45(6)			45(6)		6			1		7	1(1)	6
소계(11개교)		141(16)	884(76)	352(16)	457(20)	1,834(128)	27	130	41	43	12	3	256	11(1)	27
합 계(16개국, 34개교)		505(43)	6,057(295)	3,324(135)	3,733(162)	13,619(635)	70	526	308	363	35	19	1,321	32(1)	59

※ 아포스티유 협약 발효 예정 국가: 르완다(2024. 6. 5.)

【참고 4】

□ 재외한국교육원 기본 현황 □

(‘22.4.1. 기준)

관할 재외공관	교육원명	설립 연월일	파견자 수 (22.1.기준)	관할 내 한글학교			관할 내 동포수		
				학교수	학생수	교원수	계	일시 체류자	영주 권자
주 일본 (대)	동경 한국 교육원	'66.05.01	2	28	1,068	69	92,241	36,139	56,102
	사이타마 한국 교육원	'70.01.26	1	7	324	29	19,732	8,692	11,040
	치바 한국 교육원	'70.01.21	1	5	364	27	19,655	5,233	14,422
주 요코하마 (총)	가나가와 한국 교육원	'63.04.02	1	4	111	14	34,456	16,355	18,101
주 니가타 (총)	나가노 한국 교육원	'70.02.26	1	3	56	7	46,138	3,077	43,061
주 삿포로 (총)	삿포로 한국 교육원	'63.05.16	1	3	137	15	4,164	1,029	3,135
주 센다이 (총)	센다이 한국 교육원	'64.07.25	1	6	218	22	7,636	559	7,077
주 오사카 (총)	오사카 한국 교육원	'63.04.01	1	32	1,263	98	96,361	9,949	86,412
	나라 한국 교육원	'77.02.01	1	2	78	8	3,173	516	2,657
주 고베 (총)	교토 한국 교육원	'63.04.12	1	13	404	33	28,156	4,638	23,518
	고베 한국 교육원	'63.04.01	1	13	839	61	38,738	1,191	37,547
주 후쿠오카 (총)	오카야마 한국 교육원	'66.04.01	1	3	72	8	4,447	203	4,244
주 히로시마 (총)	후쿠오카 한국 교육원	'63.06.28	1	5	186	19	23,130	6,262	16,868
	히로시마 한국 교육원	'63.05.16	1	7	219	20	8,350	752	7,598
주 미주 지역 (15개원)	시모노세키 한국 교육원	'63.10.01	1	3	131	2	4,604	141	4,463
	위싱턴 한국 교육원	'80.07.01	1	63	3,056	669	189,474	15,818	27,151
주 뉴욕 (총)	뉴욕 한국 교육원	'81.07.01	2	114	6,474	1,359	360,053	121,232	50,256
주 시카고 (총)	시카고 한국 교육원	'81.07.01	2	85	3,260	781	357,993	108,250	39,851
주 휴스턴 (총)	휴스턴 한국 교육원	'88.08.10	1	39	2,219	570	175,446	49,460	42,114
주 L A (총)	로스앤젤레스 한국 교육원	'80.04.15	2	171	8,636	1,415	664,387	115,751	115,100
주 샌프란시스코 (총)	샌프란시스코 한국 교육원	'87.08.17	1	68	4,050	624	245,173	91,741	35,221
주 애틀랜타 (총)	애틀랜타 한국 교육원	'17.03.13	2	108	3,232	728	242,093	83,756	42,643
주 미주 지역 (7개원)	로스토프나도누 한국 교육원	'01.09.19	2	41	3,223	220	79,923	2,861	186
주 러시아 (대)	사할린 한국 교육원	'93.12.10	1	12	803	35	26,371	41	42
주 유즈노사할린스크 (총)	블라디보스톡 한국 교육원	'95.03.24	1	15	596	55	10,522	207	45
주 블라디보스톡 (총)	하바롭스크 한국 교육원	'97.08.07	1	2	44	6	11,834	61	21
주 러시아 지역 (4개원)	타슈켄트 한국 교육원	'92.05.27	3	23	1,160	21	175,865	1,611	54
주 알마티 (총)	알마티 한국 교육원	'91.08.22	2	25	1,442	125	109,923	1,527	
주 키르기스스탄 (대)	비슈케 한국 교육원	'01.05.28	1	5	264	37	18,166	982	90
주 CIS 지역 (3개원)	우크라이나 한국 교육원	'17.03.17	1	12	756	62	13,319	564	44
주 투론토 (총)	캐나다 한국 교육원	'81.07.31	1	71	3,208	390	125,291	10,838	39,841
주 시드니 (총)	시드니 한국 교육원	'89.08.01	2	49	3,309	465	113,907	19,892	52,320
주 영국 (대)	영국 한국 교육원	'81.07.01	1	22	700	147	36,690	14,679	11,274
주 프랑스 (대)	프랑스 한국 교육원	'75.12.31	3	17	1,484	139	25,417	9,719	3,174
주 프랑크푸르트 (총)	독일 한국 교육원	'81.08.04	1	32	2,121	307	47,428	10,550	25,785
주 파라과이 (대)	파라과이 한국 교육원	'80.01.01	1	3	251	26	4,838	346	4,369
주 아르헨티나 (대)	아르헨티나 한국 교육원	'87.08.21	1	13	928	129	22,844	246	14,485
주 상파울루 (총)	상파울루 한국 교육원	'88.09.01	1	26	1,292	137	35,186	270	4,909
주 오슬랜드 (분)	뉴질랜드 한국 교육원	'12.04.01	2	11	1,280	117	27,152	6,243	11,390
주 태국 (대)	태국 한국 교육원	'12.03.20	3	5	369	60	18,130	17,924	128
주 호치민 (총)	호치민시 한국 교육원	'12.11.13	2	5	676	73	91,474	91,474	
주 베트남 (대)	하노이 한국 교육원	'20.12.11	2	1	101	10	65,000	65,000	
주 말레이시아 (대)	말레이시아 한국 교육원	'20.12.30	2	8	576	89	13,667	13,518	114
주 기타 지역 (14개원)	합 계		61	1,180	60,980	9,228	3,738,547	949,297	856,852
합 계	19개국 43개원		61	1,180	60,980	9,228	3,738,547	949,297	856,852

【참고 5】

□ 외국의 학제 □

국가명	학 제												총수학 기간
	초등학교				중 학교				고등학교				
학 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2년
한 국	1	2	3	4	5	6	1	2	3	1	2	3	12년
북 한	인민1	인민2	인민3	인민4	고등중 1	고등중 2	고등 중3	고등 중4	고등 중5	고등 중6			10년
미 국	1	2	3	4	5	6	7	8	9	고1	고2	고3	12년
필 리 핀	1	2	3	4	5	6	중1	중2	중3	중4	고1	고2	12년
말레이시아	1	2	3	4	5	6	초급1	초급2	초급3	상급1	상급2		11년
브 라 질	1	2	3	4	5	6	7	8	고1	고2	고3		11년
러 시 아	1	2	3	4	5	6	7	8	9	10	11		11년
뉴질랜드	1	2	3	4	5	6	F1	F2	F3	F4	F5	F6.7	13년
호 주	1	2	3	4	5	6	중1	중2	중3	중4	고1	고2	12년
베 트 남	1	2	3	4	5	중1	중2	중3	중4	고1	고2	고3	12년

※ 나라(주)마다 약간의 학제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서식 1】

고등학교 (신 · 편)입학 신청서(귀국자용)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5조, 제82조제3항 각호 해당자 - 귀국학생 등)

지원자 (학생)	성명(한글)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국내 주소						
국내최종학력	년 월 일까지 ()학교 ()학년 (재학, 수료, 졸업)					
국외 학력	국가명	학교명	재학기간	재학 학년	국내 해당학년	정규 학교 여부
			년 월 일~ 년 월 일 (년 개월간)	()학년 (재학, 수료)	초, 중, 고 ()학년	
			년 월 일~ 년 월 일 (년 개월간)	()학년 (재학, 수료)	초, 중, 고 ()학년	
			년 월 일~ 년 월 일 (년 개월간)	()학년 (재학, 수료)	초, 중, 고 ()학년	
			년 월 일~ 년 월 일 (년 개월간)	()학년 (재학, 수료)	초, 중, 고 ()학년	

◎ 아래는 특례대상자만 작성

관계	성명	거주국	재외국민등록시기(기간)	재외국민등록시기(기간)	직업	국외근무처	비고
본인	X		- (년 개월 일)	- (년 개월 일)	X	X	
부			- (년 개월 일)	- (년 개월 일)			
모			- (년 개월 일)	- (년 개월 일)			
신청자	출국일		보호자	출국일			
	입국일			입국일			
<p>위와 같이 귀국하여 편입학하고자 하오니 제()학년에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위의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p> <p>첨부 : 구비서류 목록에 의한 서류</p> <p style="text-align: center;">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지원자 _____ (인)</p> <p style="text-align: center;">보호자 _____ (인) 연락처: _____</p> <p>()고등학교장 귀하</p>							
위의 편입학(재취학)과 관련한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합니다.					보호자:	(인)	

※ 신·편입학 신청서 작성 요령

- 신입학, 편입학 해당란에 ○으로 표시 (단, 편입학은 학년 표시)
- 지원자의 학력사항은 외국학교 전과정 성적증명서에 의해 정확히 기재하되, 초·중·고의 재학학년 및 재학기간을 모두 기재하고 기간은 월·일까지 정확히 기재
- 국내 학교과정에 해당하는 과정은 초·중·고 과정으로 구분 기입
- 부모의 체류기간은 거주기간내 거주국에서 실제 체류한 기간을 기입하고, 지원자의 체류 기간은 거주국에서 실제 체류기간과 제3국 수학시 해당 수학국에서 실제 체류기간을 각각 구분하여 기입
- 첨부서류의 사본은 반드시 원본과 대조 후 원본대조필, 대조일, 대조를 기재하고 날인
- 서식의 란은 기재하지 않음

